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 안 년 월 일 : 2022년 9월 21일

제 안 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의안 번호	관련 118
----------	-----------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 제16조제1호에서 주민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‘구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’를 규정하고 있는바,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관할 구역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를 고려하여 “구의회”를 “지방의회”로 수정하려는 것임

2. 수정 주요내용

- 가. 안 제16조제1호에 “구의회가”를 “지방의회가”로 함. (안 제16조제1호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6조제1호 중 “구의회가”를 “지방의회가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6조(주민협의회 구성) 주민협의회는 시장이 해당 <u>구청장</u> <u>및 구의회</u> 의장과 협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10명 이내 에서 구성한다.</p> <p>1. 주변영향지역 또는 물재생시설 소재 행 정동에 3년 이상 거주 하며 지역사회 발전 을 위해 헌신하고 봉 사하는 지역주민으로 서 같은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 거주 세 대주 20명 이상의 추 천을 받은자 중 <u>구의 회가</u> 추천한 주민대 표</p>	<p>제16조(주민협의회 구성) ----- ----- <u>지방자치단 체장 및 지방의회</u> 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6조(주민협의회 구성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지방 의회가 ----- -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본문 중 “서울시에 소재한”을 “제2조제1호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6조 본문 중 “구청장 및 구의회”를 “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”로 한다.

제16조제1호 중 “구의회가”를 “지방의회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주민협의회회의 의견청취) 시장은 <u>서울시에 소재한</u> 물재생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때는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복합악취농도 측정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2.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3.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	<p>제15조(주민협의회회의 의견청취) --- ----- <u>제2조제1호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(현행과 같음)2. (현행과 같음)3. (현행과 같음)4. (현행과 같음)
<p>제16조(주민협의회회의 구성) 주민협의회는 시장이 해당 <u>구청장 및 구의회</u> 의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10명 이내에서 구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주변영향지역 또는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같은 물	<p>제16조(주민협의회회의 구성) ----- ----- <u>지방자치단체장</u> <u>및 지방의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-----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<p>재생시설 소재 행정동 거주 세대 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중 <u>구의회가</u> 추천한 주민대표</p> <p>2. 제1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 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이공계 관 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, 국 ·공립 연구기관의 이공계분야 연 구원(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만 해당) 또는 이공계 분야의 지식 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 는 전문가 2명</p>	<p>----- ----- <u>지방의회가</u>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